

의안번호	2213564
의 퇴 인	이용우의원
회 답 일	2026.3.23.
추 계 번호	25B7200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의5(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) 신설	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예정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주민공론화위원회(이하 “주민공론화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(제1항)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6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25조의5(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예정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임

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2024년 기준 전국 폐기물처리업체 수는 총 18,011개소임

[표 1] 최근 5개년 폐기물처리업체 수 추이

(단위: 개소)

	2020	2021	2022	2023	2024
폐기물처리업체 수	15,711	16,087	16,902	17,895	18,011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, 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」, 각 연도.

- 개정안이 시행되어 신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주민공론화위원회가 개최될 경우,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설치될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주민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확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연도별 폐기물처리업체 현황

(단위: 개소)

연도	구 분	총 계	수집·운반업	중간처리업	최종처리업	중간재활용업	최종재활용업	종합재활용업	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
2020	총 계	15,711	8,321	217	54	1,536	227	4,774	582
	생활폐기물	2,014	1,945	5	—	19	1	44	—
	생활 + 사업장	1,278	485	43	—	580	8	162	—
	사업장폐기물	8,534	3,297	78	32	785	213	4,129	—
	건설폐기물	2,426	1,844	—	—	—	—	—	582
	지정폐기물	1,459	750	91	22	152	5	439	—
2021	총 계	121,701	70,235	1,462	432	10,410	1,424	33,608	4,132
	생활/사업장 폐기물	12,064	6,238	112	34	1,323	236	4,121	—
	건설폐기물	2,501	1,919	—	—	—	—	—	582
	지정폐기물	1,522	804	104	22	147	4	441	—
2022	총 계	16,902	9,586	207	58	1,477	209	4,774	591
	생활/사업장 폐기물	12,949	6,828	119	34	1,385	207	4,376	—
	건설폐기물	2,596	2,005	—	—	—	—	—	591
	지정폐기물	1,357	753	88	24	92	2	398	—
2023	총 계	17,895	10,410	212	64	1,502	195	4,921	591
	생활/사업장 폐기물	13,671	7,505	119	37	1,390	192	4,428	—
	건설폐기물	2,633	2,042	—	—	—	—	—	591
	지정폐기물	1,589	863	93	27	112	3	493	—
2024	총 계	18,011	10,641	204	66	1,491	188	4,828	593
	생활/사업장 폐기물	13,748	7,699	115	38	1,379	185	4,332	—
	건설폐기물	2,692	2,099	—	—	—	—	—	593
	지정폐기물	1,571	843	89	28	112	3	496	—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, 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」, 각 연도